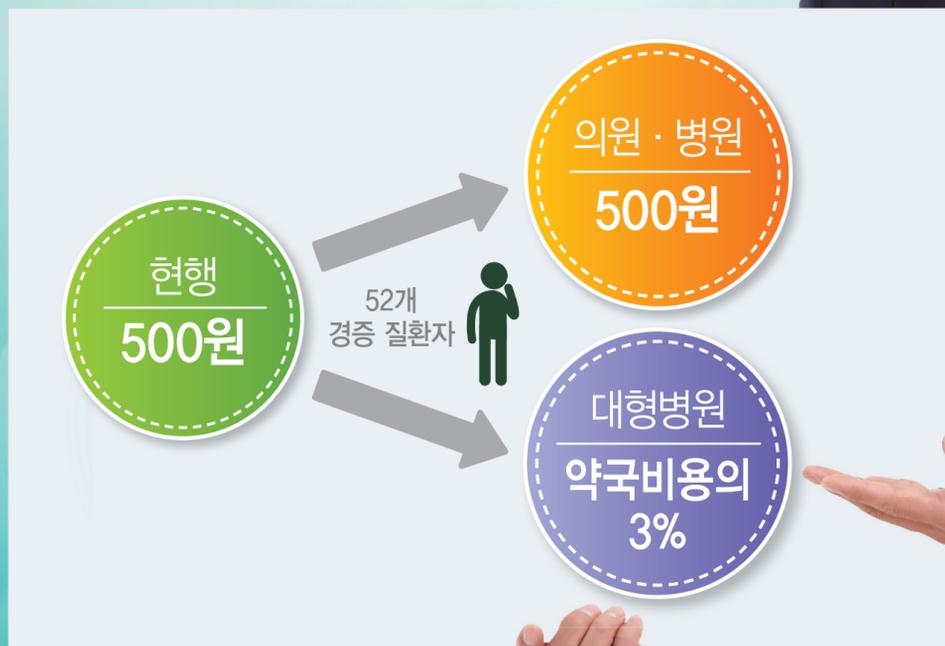


의료급여 수급권자 ·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가 고혈압 등 52개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(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)에 가시면 **약값 본인부담이** **‘약국비용의 3%’**로 변경됩니다!



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을 방문하시면,
약값 본인부담은 **‘500원’**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약값의 본인부담 기준을 변경하는 이유는?

-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,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.

건강보험에서는 '11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,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'15년 11월부터,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는 '16년 상반기에 도입 예정입니다.